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수급자(이용자)에게 개별 욕구에 맞는 주, 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①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종료일 까지로 한다.
- ② 인정유효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보호자와 기관은 변경된 인정기간에 맞추어 재계약을 체결한다.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사유 발생일로 종료될 수 있다.
 -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또는 급여종류의 변경
 - 나) 이용자의 사망, 입원, 시설입소 등으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다) 보호자 또는 이용자(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
 - 라) 이용료 장기체납 등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 ④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치매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때는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 ⑤ 노인 장기요양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 내용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후 효력이 발생한다.

3)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에는 재 계약을 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변동 등의 발생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반영한다.
- ② 다만 법령 또는 관련고시 개정등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한 후 적용한다.
- ③ 변경내용은 관련서식에 기로하여 관리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①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비용을 부담한다.
- ② 본인부담금은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면 등급, 급여종류, 감경대상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③ 비급여 항목은 서비스 이용자가 별도 100% 부담하며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1%(감경)	
		94%(감경, 의료)	
		100%(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15% (일반)	보험공단 85% 본인부담15%
		9%(감경)	보험공단 91%, 본인부담 9%,
		6%(감경, 의료)	보험공단 94%, 본인부담 6%
		0%(수급자)	보험공단 100%, 본인부담 0%

- 식사 및 간식비
- 선택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별도 신청 및 동의를 받은 경우 부과한다
(이미용서비스, 병원 동행시 발생하는 병원진료비 및 투약료 등)

5)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을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여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 인증서	· 급여유형확 인 · 본인확인	· 개인별 장기이 용계획서 · 본인부담감경	· 급여계획 · 급여계약서	· 공단통보 · 서비스실시

6) 서비스이용계약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증서 사본1부
- ②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사본 1부
-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1부
- ④ 수급자(보호자) 신원을 알수 있는 신분증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1) 이용료 산정 기준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이용시간 및 이용일 수 , 본인 부담률 등 관련법령과 공단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첨> 당해연도 요양급여수가표 참고

(2) 이용료 변경 적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는 별도 절차없이 자동으로 변경 적용된다.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변동
- ② 본인부담률 변경
- ③ 관련법령 또는 공단 기준수가 변동
- ④ 이용 일수 또는 이용시간 변경

변경된 이용료는 해당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후불청구시 반영한다.

(3)이용료 변경 고지

이용료는 관련 기준과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변동사항은 공단통보 기준에 따르며, 기관은 사전 통보절차를 두지 않는다.

(4) 공휴일 추가적용

공휴일 가산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급여비용산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자동 적용되며, 기관은 수급자의 실제 이용일 및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5)기타비용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재료비 등 추가 비용은 현재까지 부과 하지 않으나 다만, 관련기준이나 기관 운영방침 변경시 사전 안내후 적용할 수 있다.

(6) 식사비 및 간식비는 수급자가 실제 이용하여 식사·간식을 제공받은 일수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부과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 ① 서비스 제공내용 및 이용현황
- ② 수급자(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 ③ 비용발생 및 정산내역
- ④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서비스제공자 의무

- ①“대상자”의 안전한 기관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병원입원 및 결석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대상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주간보호 제공내용 의무
- ⑤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시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⑥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⑦급여제공시간에 알게된 신상
- ⑧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⑨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에 협조하여야한다.
-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변화
- 주소 및 연락처변경
- 보호자 변경 또는 비상연락망 변경
- 기타 서비스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및 본인 부담금 등의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 해야한다.
- ④ 신원인수인은 급여제공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나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타 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신원인수인이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시설은 계약해지 또는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이나 기관의 해제사유발생시 가능하며, 해제일은 상호 확인후 확정한다.

- 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시설의 서비스 제공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 시설의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된 때
- 기타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 또는 운영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 이용자가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배회성,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장기요양 이용자격을 상실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때
- 허위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계약해제시 이용료는 실제 이용일수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며 미이용 기간에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을해제하려는 경우 해제사유 및 해제일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무단 이용중단에 따른 계약해제 :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사전통보없이 연속3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시설은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인상률	11.43%	11.44%	2.05%	2.15%	2.21%	2.13%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 등급	39,810	5,972	40,650	6,098
	2등급	36,850	5,528	37,630	5,645
	3등급	34,020	5,103	34,740	5,211
	4등급	32,470	4,871	33,160	4,974
	5등급	30,920	4,638	31,580	4,737
	인지지원등급	30,920	4,638	31,580	4,737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 등급	53,360	8,004	54,490	8,174
	2등급	49,420	7,413	50,470	7,571
	3등급	45,620	6,843	46,590	6,989
	4등급	44,070	6,611	45,000	6,750
	5등급	42,500	6,375	43,400	6,510
	인지지원등급	42,500	6,375	43,400	6,51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 등급	66,360	9,954	67,770	10,166
	2등급	61,480	9,222	62,780	9,417
	3등급	56,760	8,514	57,960	8,694
	4등급	55,210	8,282	56,380	8,457
	5등급	53,640	8,046	54,780	8,217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54,780	8,217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1 등급	73,110	10,967	74,660	11,199
	2등급	67,720	10,158	69,160	10,374
	3등급	62,570	9,386	63,900	9,585
	4등급	61,000	9,150	62,290	9,344
	5등급	59,450	8,918	60,710	9,107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54,780	8,217
13시간 초과	1 등급	78,400	11,760	80,060	12,009
	2등급	72,630	10,895	74,170	11,126
	3등급	67,100	10,065	68,520	10,278
	4등급	65,540	9,831	66,930	10,040
	5등급	63,990	9,599	65,350	9,803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54,780	8,217